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정보통신2사업소장
(경유)

제목 철거발생품 처분 결정 알림

1. 관련근거

가. 물품관리규정 제50조 「불용결정기준」

나. 정보통신2사업소-207호(2018.01.05.)"철거발생품 처리 요청["청구역 등 2역 건축 시설물 개량통신공사]"

2. 정보통신2사업소에서 요청한 철거발생품 처분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철거발생품 처분 결정 내역 및 사유 (상세내역 "붙임" 참조)

부서	품명	단위	수량	금액	처분결정일	결정내역
합 계			50			
정보통신2사업소	스피커	점	50	-	2018.01.08.	폐기

○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및 성능저하

나. 조치사항

○ 폐기대상 물품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자체 폐기 후 불용품(해체, 폐기)조서 작성하여 비치

붙임 : 1. 철거발생품 처분심사 및 결정내역서 1부
2. 불용품(해체, 폐기)조서 양식 1부. 끝.

총무처장

과장 김인숙

부장(직무대행)

곽재성

팀장 김완수

처장 01/09
이권수

협조자

시행 총무처-418 (2018.01.09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9125 전송 / skykim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